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79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고동진·박준태·김상훈

성일종 · 강선영 · 이헌승

박충권 · 김성원 · 엄태영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 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 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6항 전단 중 "권리변동계획에"를 "이전고시·권리변동계획에"로, "확정"을 "확정·등기절차"로, "제87조를"을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는 "제49조에 따라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비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준공인가"는 "사용검사"로,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 른 특례) ① ~ ⑤ (생 략) 른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 ⑥ 이전고시·권리변동계획에-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정 • 등<u>기절차</u>-----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 86조, 제87조 및 제88조를---------. ---경우 "사업시행자"는 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 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때"는 "제49조에 따라 사용검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 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 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 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 물"로 본다. 비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준 공인가"는 "사용검사"로, "시장 ·군수등"은 "시장·군수·구 <u>청장"으로,-----</u>

<u>.</u>